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550 호

2003 년 12 월 19 일 금 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5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개정규칙)- 3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95호(인천광역시남동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폐지규정)----- 10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1호(전문건설업행정처분공고)----- 1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2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
금지원조례(안)입법예고공고)-----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3호(전문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5호(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원모집공고)----- 2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2. 19.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0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중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을 “국제체육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및구성)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육상부로 하고 단장은 구청장이 되며, 총원은 9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육상부의 구성은 감독 1명, 트레이너 겸 선수 1명, 선수 6명, 합숙소근무자(조리사) 1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맹경기단체장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체육회장”을 “구청장이 추천한 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맹경기단체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 트레이너겸 선수 및 선수(이하 “감독 및 선수”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선수는 최초 임용시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복무기간 만료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의2중 “감독, 트레이너겸 선수 및 선수촌 근무자”를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로 동조제1호중 “60세”에서 “57”로하고, 동조제2호중 “선수촌 근무자”를 “합숙소근무자(조리사)”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홍보실장 소속하에”를 “문화홍보실 소속하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훈련)①선수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선수의 훈련은 구청에서 지정하는 전용연습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전지훈련은 동계 및 하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간 내에서 실시하되, 훈련기간은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계훈련 : 12월 ~ 2월

2. 하계훈련 : 7월 ~ 8월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8. 감독은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 3년간 1회 이상을 3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거나,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대회에서 4년간 1회 이상을 3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9.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2년간 1회 이상을 3위 이내에 입상하지 못하였을 때

10. 합숙소근무자(조리사)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 또는 질병·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제2항중 “조리사”를 “합숙소근무자(조리사)”로 하며, 동조동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숙소근무자(조리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반명합판 사진 2매

3. 건강진단서 1부.

제8조제1항중 “감독, 선수 및 조리사”를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로 한다

제9조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로 하며,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한다

제10조제1항내지 제2항중 “감독, 선수 및 조리사”를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로 하며, 동조제3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승급은 연간 1회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중 “감독, 선수 및 조리사”를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감독, 트레이너겸 선수 및 선수”를 “감독 및 선수”로 하며, 동조제3항의 제2호내지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회 이상을 1위에 입상한 자
3. 2급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개인성적으로 3회 이상을 2위에 입상한 자

제12조제1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지훈련비는 연간 60일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13조제5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국체육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자에게는 기준점수에 미달하여도 40점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중 “기간에”를 “일수에”로 한다.

제15조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본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육상운동경기부”를 “운동경기부”로 한다.

별표1, 별표4, 별표7, 별표8,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의 개정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 개정사유
- 감독 및 선수, 조리원의 임용·면직사유를 구체화하여 운동경기부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함.
 - 훈련조항을 신설하여 선수훈련을 위한 규정 명시
 - 운동경기부의 봉급지급표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 각종 수당 및 보상금을 현실화하여 감독 및 선수들의 사기진작 도모
- 주요개정골자
- 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을 명시 (안 제2조)
 - 감독 및 선수의 임용기간을 명시 (안 제3조)
 - 훈련조항 신설 (안 제5조의 2).
 - 운동경기부의 면직사유를 구체화 (안 제6조)
 - 조리사의 임용에 대한 신원확인 조항 명시 (안 제7조제2항)
 - 운동수당 지급기준 조정 (안 제11조제3항)
 - 성과금 및 전지훈련비 지급규정 명시 (안 제13조제5항)
 - 운동경기부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규정 명시 (안 제15조제2항)
 - 운동경기부 봉급지급표 개정 (안 제8조제1항제1호 별표1)
 - 운동수당 및 급식비 지급기준 개정 (안 제11조제2항 별표4)
 -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안 제13조제2항 별표7)
 -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 개정 (안 제13조제4항 별표8)
 -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개정 (안 제14조제2항 별표9)
 - 기타 규칙상의 용어 수정
- *****

[별표1]

감독·선수 및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지급표

호 봉	감독	선수	합숙소근무자 (조리사)
1	1,138,700(1,079,30)	810,000(767,800)	443,600(420,500)
2	1,159,200(1,098,800)	829,000	462,600
3	1,179,800	848,000	481,600
4	1,200,400	866,900	500,400
5	1,220,800	885,900	519,400
6	1,242,800	906,600	540,100
7	1,265,100	926,900	560,500
8	1,287,100	947,600	581,100
9	1,309,400	968,000	601,700
10	1,331,400	988,700	622,300
11	1,355,300	1,010,800	644,300
12	1,378,700	1,033,000	666,300
13	1,402,500	1,055,000	688,600
14	1,426,300	1,077,000	710,600
15	1,450,000	1,099,300	732,800
16	1,472,000	1,119,800	
17	1,494,100	1,140,400	
18	1,516,400	1,160,700	
19	1,538,400	1,181,400	
20	1,560,600	1,201,900	
21	1,581,000		
22	1,601,600		
23	1,622,100		
24	1,642,600		
25	1,663,000		
26	1,682,100		
27	1,701,000		
28	1,720,100		
29	1,739,000		

[별표4]

운동수당 및 급식비 지급구분

구 분		운 동 수 당	급 식 비
감독		매월 300,000원	매월 270,000원
트레이너		매월 220,000원	매월 270,000원
선수	특급	매월 500,000원	매월 270,000원
	1급	매월 300,000원	매월 270,000원
	2급	매월 200,000원	매월 270,000원
	3급	매월 100,000원	매월 270,000원

[별표7]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아래 참조
			1위	2위	3위	
	감 독		250,000	150,000	100,000	
	선 수	단체종합	500,000	350,000	250,000	
		단체종목	350,000	250,000	150,000	
		개인종합	250,000	150,000	100,000	
개인종목		150,000	100,000	70,000		
기 록 개 신 (선수)	기 록 구 분		지 급 액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 비고

- 1) 입상부분 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선수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 3) 입상부분과 기록개신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 4) 전국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를 의미한다.

[별표8]

성과금 지급점수 산정기준

구 분	1위	2위	3위	비고
올 림 픽 게 임	1000점	600점	400점	
세계선수권대회	600점	400점	300점	
아 시 안 게 임	400점	300점	200점	
아시아선수권대회	200점	120점	80점	
전국체육대회	100점	60점	40점	
전국규모대회	50점×배분비율	30점×배분비율	20점×배분비율	

- ※ 비고 1. 기타 체육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점수를 산정한다.
2. 전국규모대회 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비율	해 당 전 국 규 모 대 회 명 칭
육상	35%	①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②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③전국실업단대항육상경기대회

[별표9]

우수선수유치비 지급기준

급수	유 치 비	지급액(원)
1급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에 (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출전하여 3위이내의 입상 경력자	20,000,000
2급	•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 지난 1년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이상 입상경력자 •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 종목 한국 신기록 수립자	15,000,000
3급	• 지난 1년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1회이상 입상경력자	10,000,000
4급	• 지난 1년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에 입상경력자	5,000,000

훈 령

인천광역시남동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3. 12. 19.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폐지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은 산업집적법 위반행위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안이나, 본 규정의 본 규정의 각 조문이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5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제6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법령의 중복금지에 따라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인천광역시남동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1호

전문건설업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미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1부.

2003. 12. 1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번호	상호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및 근거
1	(주)가영엔지니어링	도기봉	설비 인천92-12-18 가스1 93-04-06	인천, 남동, 구월3동 1110-10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2	광원도시개발(주)	이정호	가스1 인천남동97-27-11	인천, 남동, 구월1동1182-2 중앙빌딩3층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3	(주)구암엔지니어링	윤종관	설비 인천남동01-12-13	인천, 남동, 고잔동 646-11공단75블럭12롯데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4	기성산업	송종임	설비 인천남동01-12-15	인천, 남동, 고잔동 723-2공단153블럭3롯데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5	(주)대림에너지	박경수	가스1 인천남동98-27-73	인천, 남동, 만수6동 1100명원빌딩301호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6	대양펌프산업	윤율성	설비 인천남동01-12-02	인천, 남동, 고잔동 657-7공단111블럭6롯데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7	대호가스설비	김진국	가스1 인천남구00-27-1-2	인천 남, 학익동 520-1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8	동방엔지니어링	박덕성	설비 인천12-87	인천, 남동, 구월4동1300-11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9	(주)선화건설	박덕철	설비 경기94-12-34	인천, 남동, 간석4동220-2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0	(주)세아	이선규	설비 인천남동01-12-11	인천, 남동, 간석3동110-3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1	영신기공(주)	이석원	설비 인천98-12-11	인천, 남동, 고잔동 636,165블럭2롯데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2	일신가스텍	박찬형	가스1 인천남동00-27-1-4	인천, 남동, 고잔동 712-14공단148블럭7롯데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번호	상호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및 근거
13	(주)정우엔지니어링	이필원	설비 인천92-12-33 가스1 인천남동98-27-11 9	인천, 남동, 구월4동 1279-15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7)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4	정진설비(주)	신상운	설비 인천95-12-12	인천, 남동, 간석1동414-8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5	(주)진성이엔지	서충욱	가스1 인천남동01-27-1- 3	인천, 남동, 구월1동1453-2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6	(주)청람에너지	안영균	가스1 인천남동00-27-1- 3	인천, 남동, 구월1동 1168-5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7	태봉산업기술(주)	양인철	설비 인천남동97-12-1	인천, 남동, 남촌동630-5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8	태웅개발(주)	박영운	설비 82-12-149	인천, 남동, 구월3동1371-8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19	태종기공(주)	최태규	설비 인천남동99-12-01 가스1 인천남동99-27-30	인천 남동, 간석3동918-5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20	한국수도(주)	김병옥	설비 서울94-12-306	인천, 남동, 만수5동912-13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21	현대기계공업(주)	박용희	설비 인천남동00-12-2	인천, 남동, 고잔동727공단156 블럭1롯데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22	(주)웨스텍	이영철	설비 인천남동01-12-16 가스1 인천남동01-27-1- 6	인천, 남동, 논현동427-4공단16블럭5 롯데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의거취 근2년간실적미신고

최근2년간 실적미신고업체 행정조치 내역

행정조치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 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주)가영엔지니어링	설비 인천92-12-18 가스1 93-04-06	도기봉	구월3동1110-10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광원도시개발(주)	가스1 인천남동97-27-11	이정호	구월1동1182-2 중앙빌딩3층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주)구암엔지니어링	설비 인천남동01-12-13	윤종관	고잔동646-11 공단75블럭12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기성산업	설비 인천남동01-12-15	송종임	고잔동723-2 공단153블럭3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주)대림에너지	가스1 인천남동98-27-73	박경수	만수6동1100 명원빌딩30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대양펄프산업	설비 인천남동01-12-02	윤율성	고잔동657-7 공단111블럭6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2항 에 의거 의 견 진 술 참작하여 1/2경감 하여부과
대호가스설비	가스1 인천남구00-27-1-2	김진국	남구, 학익동520-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동방엔지니어링	설비 인천12-87	박덕성	구월4동1300-1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주)선화건설	설비 경기94-12-34	박덕철	간석4동220-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주)세아	설비 인천남동01-12-11	이선규	간석3동110-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2항 에 의거 의 견 진 술 참작하여 1/2경감 하여부과
영신기공(주)	설비 인천98-12-11	이석원	고잔동636 165블럭2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최근2년간 실적미신고업체 행정조치 내역

행정조치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 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일신가스텍	가스1 인천남동00-27-1-4	박찬형	고잔동712-14 공단148블럭7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2항 에 의거 의견진술 참작하여1/2경감 하여부과
(주)경우엔지니어링	설비 인천92-12-33 가스1 인천남동98-27-119	이필원	구월4동1279-1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정진설비(주)	설비 인천95-12-12	신상운	간석1동414-8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주)진성이엔지	가스1 인천남동01-27-1-3	서충옥	구월1동1453-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주)청람에너지	가스1 인천남동00-27-1-3	안영균	구월1동1168-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2항 에 의거 의견진술 참작하여1/2경감 하여부과
태봉산업기술(주)	설비 인천남동97-12-1	양인철	남촌동630-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3월) 2003.12.17~ 2004.03.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2항 에 의거 의견진술 참작하여1/2경감 하여부과
태웅개발(주)	설비 82-12-149	박영운	구월3동1371-8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태종기공(주)	설비 인천남동99-12-01 가스1 인천남동99-27-30	최태규	간석3동918-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한국수도(주)	설비 서울94-12-306	김병옥	만수5동912-1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현대기계공업(주)	설비 인천남동00-12-2	박용희	고잔동727 공단156블럭1롯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최근2년간 실적미신고업체 행정조치 내역

행정조치 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 고
상호명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주)웨스텍	설비 인천남동01-12-16 가스1 인천남동01-27-1-6	이영철	논현동427-4공단1 6블럭5동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영업정지(6월) 2003.12.17~ 2004.06.16	
고려소방건설(주)	설비 인천남동00-12-06	이상운	구월2동70-13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의의거 최근2년간실적미 신고		2003.11.26 자진말소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2호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법예고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1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액 폐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하여 보조금총액 상한제를 도입 운영하고
-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 제5조)
 - 지원대상: 법령·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구가 권장하는 사업
 - 지원범위: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안 제6조 ~ 제9조)
 - 지원계획 수립·공고 → 신청·접수 → 심의 → 결과 통보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기능(안 제10조, 제11조)
 - 구성: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인
 - 기능: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등

-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안 제17조, 제18조)
 - 실적보고·사업비정산·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 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정의 설정·관리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1. 7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032-453-216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된 단체
3. 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 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3호

전문건설업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지방세(면허세) 3회이상 체납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공시 송달 합니다.

1. 청문일시 : 2004.01.05일 기간중 출석
2. 청문장소 :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
3. 청문대상업체 및 사유 : 두남건설

번호	등록업종	상 호	대표자	주소	청문사유	처분내용	반송사유
1	토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	(주)두남건설	김동중	고잔동636 -1공단65B 2L	지방세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이사

4. 청문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 참석시)

○ 주장을 입증할서류

5. 청문시 유의사항

- ① 귀하는 청문실시 기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간중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않고 행정처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인천광역시남동구청 건설과: ☎ 453-2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12.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605호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조사원모집공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00명
2. 자격요건
 - 2003. 12. 22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84.1.1 ~ 59.12.31일
일 이전 출생여성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3.12.22 ~ 2003.12.24 (근무시간중)
 - 접 수 처 : 남동구청 6층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453-2432)
 - ※ 직접방문접수 (우편접수불가)
4.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5.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간 및 장소 - 접수시 통보)
6. 전형결과 : 개별통보
7. 근로조건 : 주6일근무 (월~토) / 일급 : 27,716원
8. 조사기간 : 2004. 1. 2 ~ 1. 31.
9. 주요조사내용
 - 기본현황조사 : 시설물 명칭 및 상호, 소재지등
 - 부과대상자 현황 :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등
 - 부과대상용도 및 부과제외·면제시설의 용도, 면적조사
 - 용수 및 연료사용현황 조사
 - 반송고지서(체납고지서) 송달주소 확인
10. 기타사항
 -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 (각 조사동 거주자 우선 2배수로 마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1. 공고기간 : 2003.12.22 ~ 2003.12.24

2003. 12.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